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과정과 경제적 효과

1.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과정

□ 1993년 이후 18년간 WTO 가입 추진

- 러시아는 1993년 이후 18년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가입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음.
- 러시아는 시장경제 체제 편입을 가속화하고 WTO의 규범에 따른 권리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WTO 가입을 추진해 왔음.
- 1991년 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 이외의 대부분 구소련(CIS) 국가들은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음.

□ 2000년 푸틴 정부 출범 이후 WTO 가입 추진 노력에 박차

- 1993년 6월, 러시아는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가입을 신청했음.
- 1990년에 당시 구소련이 GATT의 옵서버 자격을 부여받고, 즉시 GATT 가입을 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구소련의 옵서버 자격을 승계해 1993년에 GATT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신규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따라 가입 신청,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설치 및 양자협상 진행, 다자협상 및 최종합의, 공식 가입의 단계를 거치게 됨.
- 1995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WTO 간 1차 작업반회의가 개최되어 가입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러시아 내 정치적 갈등 및 이해당사자의 반대, 전문가 및 인력 부족,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 1998년에 러시아가 상품시장 접근 기본안 및 농업부문 지원안을 WTO 회원국에 제시하며 가입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음. 2000년 5월 푸틴 정부가 출범한 이후 WTO 가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며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음.

□ EU 및 미국과 WTO 가입 협상 진전에 난항

- 러시아는 EU 및 미국과는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양자협상을 타결했으나 원목수출세 인상,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 관한 이견으로 WTO 가입협상에 난항을 겪었음.
- 2004년 EU와의 협상에서 목재 관련 수출세를 점진적으로 영세율까지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입장을 선회해 자국의 원목 가공업을 육성하고자 원목 수출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했음. 이에 러시아 원목의 주요 소비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불만을 제기하며 러시아의 WTO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함.
- 2006년 미국과 협상 타결시 러시아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국제 수준에 맞추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미국은 러시아의 관련 법규 개정과 이행 속도가 더딘 것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음.

□ 미국과 EU, 2010년 말 러시아의 WTO 가입 지지의사 표명

- 2010년 들어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10월과 12월 각각 미국과 EU의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음.
- 2010년 10월 쿠드린(A. L. Kudrin) 러시아 재무장관은 미국과 WTO 가입에 관한 주요 이견을 모두 해결했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합의는 사실상 이루어졌음을 밝힘.
- 2010년 12월 러시아는 EU와의 주된 쟁점이었던 원목 수출세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아시아발 유럽행 화물열차의 러시아 통과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WTO 가입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받음.

□ 2011년 11월, 그루지야와의 양자협상 타결

- 2011년 11월 러시아는 그루지야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에 대해 스위스가 제안한 중재안을 수락하여 유일한 양자협상 미타결국인 그루지야와 협상을 타결했음.
- 그루지야는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아(South Ossetia)와 압하지야(Abkhazia) 자치공화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두 공화국에 자국 세관 직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음.¹⁾ 그러나 두 독립 선언국에 자국군을 주둔시키고 있던 러시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스위스가 제안한 중재안은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러시아 간 국경 검문소에 국제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이 지역을 통한 교역 자료는 그루지야 측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루지야는 2011년 10월 27일 이 중재안을 수용했으며, 양국은 11월 9일자로 양자협상을 타결했음.

1) 그루지야는 2004년 러시아의 시장개방조건에 대한 양자협상에 서명한 바 있으나, 2006년 중반 기존의 양자협상 동의를 철회했음.

□ WTO 가입작업반, 러시아 가입 관련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 러시아 WTO 가입작업반(실무그룹)은 11월 10일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WTO 가입 조건 등을 명시한 실무그룹 보고서를 채택했음.
-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18년간 지속되어 온 러시아의 WTO 가입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이 날 채택된 실무그룹 보고서는 2011년 12월 15~17일 개최되는 제8차 WTO 각료회의에 공식 의제로 채택되어 최종 승인을 받게 됨.
- 2011년 12월 WTO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실무그룹 보고서가 승인되면 러시아 의회는 2012년 6월 15일까지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의회 비준 후 30일이 경과하면 WTO 가입협정이 공식 발효됨.
- 러시아의 WTO 협상 대표 메드베드코프(M. Medvedkov)는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및 의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고, 2012년 3월 예정되어 있는 대선 후 2012년 중순에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함.

2. WTO 가입에 따른 주요 이행조건

- ※ 2011년 11월 10일 채택된 WTO 실무그룹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WTO 가입 이후 준수해야 할 상품 및 서비스시장 개방 조건, 농업보조금 제한, 식품·동식물 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 관련 협정(TBT) 이행,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음.²⁾

□ 상품시장 개방

- 러시아는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에서 7.8%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음. 농산물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는 현행 13.2%에서 10.8%로, 공산품 수입관세는 현행 9.5%에서 7.3%로 인하할 계획임.

2) 관련 주요 내용은 WTO 웹사이트(www.wto.org)를 참조함.

- 관세율 인하항목 중 약 3분의 1은 WTO 가입 발효 시점부터 적용되며, 그 외 약 4분의 1 가량은 3년 이내에 인하하기로 정함.

□ 서비스시장 개방

- 러시아는 통신, 보험, 은행, 유통, 운송 등 11개 서비스부문의 116개 항목에 대해 양허했음.
 - 전기통신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 제한조치는 WTO 가입 후 4년 이내에 폐지
 - 외국계 보험사는 WTO 가입 9년 경과 이후 러시아 내 지점의 설립 허용
 - 외국계 은행 자회사 설립 허용(단, 외국자본 투자는 러시아 은행산업 총자본의 50% 미만 유지)
 - WTO 가입 후 즉시 유통 관련 도·소매, 프랜차이즈 부문의 외국 기업 진출 허용

<표 1> 러시아산 주요 상품의 수입관세율 인하 내용

상품명	현행 평균관세율	인하 평균관세율
유제품	19.8%	14.9%
자동차	15.5%	12.0%
곡류	15.1%	10.0%
목재 및 지류	13.4%	8.0%
지방종자(oilseed), 지방, 유지	9.0%	7.1%
화학제품	6.5%	5.2%
전자기계	8.4%	6.2%
정보기기	5.4%	0%

자료: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1_e/acc_rus_10nov11_e.htm, 2011-11-18 검색.

□ 천연가스 및 농업보조금 제한 등

- 러시아 내 천연가스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는 일반적인 상업적 고려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
 -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 후에도 국내의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가계 및 비상업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천연가스 가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러시아는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2012년에는 90억 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2018년까지 44억 달러로 축소할 계획임.
 -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은 궁극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치는 WTO 가입 시점부터 폐지함.
- 그 외 식품·동식물 검역(SPS) 및 무역상 기술장벽 관련 협정(TBT) 이행,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WTO 규정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기로 정함.

3. WTO 가입 이후의 경제적 효과

□ 러시아 경제의 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및 행정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세관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 증대에 따른 경쟁 과정에서 러시아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전반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효율성 증대로 향후 10년간 GDP 규모가 11%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기준 러시아의 Doing Business(IFC) 순위는 183개국 중 120위, GCI(WEF) 순위는 142개국 중 66위 수준이나 WTO 가입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정비될 경우 대 러시아 외국인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교역 규모 확대

- 러시아의 WTO 가입은 전반적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대외 교역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관세 인하항목 중 3분의 2 이상은 가입 후 1년에서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수입규모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2008년 및 2010년 중에 전년 대비 각각 36%, 31% 및 30% 증가했으며, 2011년에도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WTO 가입 이후에는 수입 규모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대외경쟁 치열 예상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철강 및 화학산업 등은 시장 접근성 확대 등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품질의 수입상품 유입 증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러시아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상실 및 퇴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또 고가품의 수입 증가와 외국 상품의 러시아 시장 잠식 등의 부작용도 예상됨.

- 전문가들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식품가공, 섬유, 건축자재 분야는 WTO 가입 이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 외에도 러시아 은행 및 보험산업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5708)

E-mail: johuh@koreaexim.go.kr